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1 선고 2023가단51898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, 이하나

변 론 종 결 2024. 9. 30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,556,885원 및 그중 3,415,470원에 대하여 2023. 4. 20.부터 2023. 6. 17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0. 7. 29.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0,450,000,000원, 보증기한 2025. 7. 29.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저축은행으로부터 11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,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, 원고가 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 A은 위 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, 이에 원고가 2023. 4. 20. 위 은행에 5,697,2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.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2022. 1. 1.부터 연 8%이고, 원고가 2024. 8. 29. 2,281,769원을 회수하였으며, 가지급금은 75,40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5, 7, 11, 1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잔액 3,415,470원(5,697,239원 - 2,281,769원), 가지급금 75,400원 및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66,015원[2,281,769원 × 약정손해금율 8% × 132일(대위변제일 2024. 4. 20.부터 회수일 2024. 8. 29.까지)/365일]의 합계 3,556,885원(3,415,470원 + 75,400원 + 66,015원) 및 그중 잔액 3,415,4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2023. 4. 2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. 6. 17.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8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승곤